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드단202817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원 고 갑
피 고 을
변 론 종 결 2019. 4. 26.
판 결 선 고 2019. 6.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라고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본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가 있음에도, 2013. 6. 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와 동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중 2018. 1. 28. 원고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경 △△경찰서에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원고에게 3회에 걸친 상해 및 1회 폭행을 가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9. 1. 22.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통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5년에 걸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과 1억 원의 재산분할을 구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하였다면 이를 청산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분할대상재산으로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아파트, ② 부산 소재 토지 등이 있다.

그런데, ①번 아파트는 피고가 2013. 6. 20. 매매대금 8,4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5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과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충당하였는바, 원고가 위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거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기여한 바는 없다. 따라서 위 ①번 아파트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음으로 ②번 부동산들은 피고가 2015. 3. 18. 매매대금 8억 2,700만원에 매수한 것인데, 위 매매대금 중 8억 원은 위 ①번 아파트 및 ②번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공장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변제하여 파탄 시점인 2018. 2. 19. 기준 7억 2,600만원 상당이 남아 있다. 원고가 위 매매

대금 마련 또는 대출채무 변제에 기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위 ②번 부동산들 역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재산들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피고의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위 부동산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들은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에게 다른 분할할 재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2. 19. 또다시 원고를 폭행하여 많이 다치게 할 때에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28. 원고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2. 19. 원고에게 "손찌검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또 손찌검을 해서 많이 다치고 할 때에는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위 각서의 작성경위와 그 배경, 1억 원이 피고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각서에서 정한 1억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해 보이므로, 이를 4,000만원으로 감액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일예